

# 1947년 9월 16일자 38도선 경비에 대한 내무국장 박일우의 지시

기밀  
조선어에서 번역

사업 범위에 관한 지시.

38도선을 경비하기 위해 개별적인 국경경비대대들을 창설하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수행한다.

해당 도 내무과의 사업 범위에 대하여.

## 1. 대대장의 역할

- a) 제7 및 제9대대장은 내무국장 직속이다. 도의 일반적인 경비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대대장들은 도 내무과장에게 귀속된다.
- b) 각 대대와 과 간에 밀접한 연락을 유지한다.
- c) 38도선에서 5km까지의 지역을 국경구역으로 간주한다.
- d)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 내무과에서 수행한다.
- e) 국경구역에 위치한 경찰지서, 경찰관구 및 통행 통제소 등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대장의 지시에 따르며, 대대장은 도 내무과장에게 이를 즉각 보고한다.
- f) 대대장들은 각 군과 면의 인력, 운송수단 및 여타 38도선 경비에 필요한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- g) 국경구역 내에서의 형사사건은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국에서 담당한다. 그리고 대대장은 도 내무과장과 밀접하게 협조한다.

## 2. 국경 위반에 대하여

- a) 38도선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경찰대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.
- b) 특별한 통행증을 소지하고 있는 [관독불가]
- c) 체포된 자들은 신문을 하기 위해 수용소(сборный пункт)로 보내진다.
- d) 38도선 통과자는 자기의 경찰기관에서 발행한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. 통행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국경위반자로 간주된다. 경찰은 이를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.
- e) 수용소에서 대대장은 신문을 마친 후에 아무런 의심도 제기되지 않은 자를 석방하는 권리를 갖는다. 의심스러운 자는 신문조서와 함께 내무국 혹은 도 경찰서로 이송한다.
- f) 신문 중에 위반자가 의심스럽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는 국장의 증명서를 소지하고 집으로 보내진다. 그와 같은 위반자는 도의 경계선에서 도 경찰과장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보내진다.
- g) 다른 경찰기관들은 대대장이 작성한 죄가 없는 자라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통과자를 위반자로 체포할 수 없다.

비고 :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체포된 자는 자신이 받은 증명서를 지역 경찰기관에 제시해

야 한다.

- h) 체포된 자는 수용소에서 신분증을 압수당하고 체포된 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보내지며, 그에게는 해당 등록증이 교부된다. 체포된 자를 집으로 보낼 경우 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.
- i) 위반자에게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압수하고 이를 장부에 기입한다. 후에 이를 내무국장에게 보고하고, 재물 문제는 북조선 검찰을 통해 해결한다.
- j) 국경 위반자에게는 수인(囚人)과 동일하게 수용소에서 급식을 제공한다.

### 3. 밀수와의 투쟁 방안

- a) 상업국장과 내무국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의 상품 운반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b)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유형의 상품은 몰수한다.
- c) 몰수된 모든 재물은 등록되어야 하며, 이를 소비해서는 안된다.

### 4. 수용소의 조직에 대하여

- a) 수용소는 국경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적절하게 조직되어야 한다.
- b) 대대장과 경찰과장이 국장의 허락을 받아 수용소 위치를 결정한다. 수용소를 조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내무국에서 지불한다.
- c) 수용소에 필수적인 위생도구를 비치한다.
- d) 위반자에게는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. 그들은 항상 경찰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.
- e) 위반자에게 조직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.
- f) 위반자들의 수용소 체류기간은 7일이다. 검사의 허락을 받고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 5. 구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

- a) 각 대대는 새로운 영창을 건설하지 않으며, 기존에 있는 것만을 이용한다.
- b) 경찰기관은 대대의 요구에 따라 영창시설을 제공한다.